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21

발의연월일: 2024. 10. 25.

발 의 자:김재섭·송언석·인요한

김기웅 • 배준영 • 주호영

유용원 · 김장겸 · 김상훈

최보윤 · 최은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정보를 다수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 무단삭제 및 사후적인 변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분산원장 기술은 금융거래를 비롯한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해외 주요국에서도 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하여 기존 중앙집중형 증권 발행·유통 인프라 보다 효율성, 보안성, 시스템 안정성 및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음. 특히 독일의 경우 우리의 전자증권법에 대응하는 전자증권도입법을 제정하면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전자적 증권 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발행인도 그 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증권 거래 방식을 혁신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는 2023년 2월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발표하여 현행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체계 하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증권, 즉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제도화하기로 한바 있음.

이에 증권의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 제도에 해당하는 전자증권법에서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뒷받침 하에 안정적인 토큰증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 전자증권법 체계에 마련된 총량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를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주식등의 정보를 다수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 무단 삭제 및 사후적인 변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분산원장을 정의하고, 분 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 주식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 등으로 하는 한편, 분산원장을 이용해 자기가 발행한 주식등의 전 자등록업무를 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정의함(안 제2조).
- 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를 신설하여 자기자본, 인력·물적설비, 분산원장, 대주주, 사회적 신용, 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을 갖춘발행인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여 전자등록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 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한 자는 대주주 요건 외 등록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되, 자기자본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은 완화된 요건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19조의4 신설).
- 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유지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폐업·파산하는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5 신설).
-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만을 이용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 바.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대해서도 현행과 동일하게 그 작성 및 관리 책임은 계좌가 개설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지도록 명확히 함(안 제23조의2제3항 신설).
- 사. 전자등록기관이 총량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인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려는 경우 4주 전에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전자등록기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고객계좌부를 열람·출력·복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4항및 제5항 신설).
- 아.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분산원장등록주식등과

분산원장이 아닌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 간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23조의2제6항 신설).

- 자. 분산원장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는 물리적 파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거래 관계 종료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파기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안 제23조의3 신설).
- 차.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책임으로 인하여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 그 해소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전자등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원 적립 의무를 부과함(안 제42조의2 신설).
- 카. 금융감독원장 외에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도 전자증권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
- 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업무에 분산원장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 이용에 관한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73조).
- 파. 분산원장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 관리방법을 위반하거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초과분 해소를 위한 재원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분산원장을 이용하는 계 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기관의 총량관리를 위한 통지 또는 열람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5

법률 제 호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2, 제4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분산원장"이란 주식등에 관한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 간순서대로 공동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무단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그 관리 체계를 말한다.
- 4의2.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란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 등록된 주식등을 말한다.
- 8.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란 분산원장을 이용하여 자신이 발행하는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려는 자로서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제19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의2.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9조의2(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등록) 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 2.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 3. 권리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계좌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4. 자신이 발행하는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이용하려는 분산원장이 전자등록에 적합할 것
-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 6.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8.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 ③ 제2항의 등록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의3(등록의 신청 등) ①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 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19조의2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2.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3. 제2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의4(등록요건의 유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제19조의2에 따른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등록요 건(제6호를 제외하며,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9조의5(등록의 직권말소) ① 금융위원회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1. 제19조의4를 위반한 경우

- 2.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발행인 계좌관 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 개월 이상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 록을 말소한 경우
-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5. 제42조의2를 위반한 경우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 말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3조의2(분산원장의 이용 등) ①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산원장의 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한하며,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 ③ 분산원장인 고객계좌부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객계좌가 개설된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가 개설된 전자등록기관이

각각 고객계좌부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④ 제1항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하려는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을 이용하기 4주 전에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해당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기관이 고객계좌부의 열람 또는 출력·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그 고객계좌부를 열람 또는 출력·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아닌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하거나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아닌 전자등록주식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 1. 발행인이 해당 주식등에 대한 권리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 2.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제23조의3(분산원장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인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 또는 기록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이

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정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2조의2(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초과분 해소의무) ① 발행인 계좌관 리기관은 제42조에 따른 초과분에 대한 해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원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의 적립 규모와 관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73조제4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제23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전자등록업무에 분산원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자
- 7.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업무에 분산원장을 이용한 자

제75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3조의3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42조의2에 따라 재원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제75조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 1의3.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열람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3의2. "분산원장"이란 주식등에
	관한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순서대로 공동 기재
	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
	치를 통하여 무단삭제 및 사
	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u>장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u>
	을 포함한다) 및 그 관리 체계
	<u>를 말한다.</u>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4의2.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란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
	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말
	<u>한다.</u>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란
	분산원장을 이용하여 자신이
	발행하는 주식등을 전자등록
	하려는 자로서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19조(계좌관리기관) 다음 각 호	제19조(계좌관리기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다.

1. ~ 6. (생략)

<신 설>

7. · 8. (생략)

<신 설>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7. · 8. (현행과 같음)
- 제19조의2(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등록) ① 발행인 계좌관리기 관이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7호 ·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 2.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 3. 권리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계좌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 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 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4. 자신이 발행하는 주식등의

<u><신 설></u>

전자등록에 이용하려는 분산 원장이 전자등록에 적합할 것

-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

 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 6.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신용을 갖출 것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8.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 ③ 제2항의 등록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의3(등록의 신청 등) ① 제 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작성 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 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 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 <u>다.</u>
-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을 거부하 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19조의2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2.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3. 제2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 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 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심사의 방법·절차,

<신 설>

<u>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u> <u>령으로 정한다.</u>

제19조의4(등록요건의 유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제19조의2에 따른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같은 조 제2항각 호의 등록요건(제6호를 제외하며,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한다.

제19조의5(등록의 직권말소) ① 금융위원회는 발행인 계좌관리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1. 제19조의4를 위반한 경우
- 2.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제42조의2를 위반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
말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
게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분산원장의 이용 등)
①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
관은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
리에 분산원장을 이용할 수 있
다. 다만,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은 분산원장만을 이용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산원장의 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한하며,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③ 분산원장인 고객계좌부는 제 22조제1항에 따라 고객계좌가

개설된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 장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부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계좌 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가 개설된 전자등록기관이 각각 고객계좌 부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부의 작성 및 관리에 따른 책임 을 진다.

④ 제1항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하려는 계좌관리기관은 분산 원장을 이용하기 4주 전에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당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계좌관리기관은 전 자등록기관이 고객계좌부의 열 람 또는 출력·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이 정하는 방 식에 따라 그 고객계좌부를 열 람 또는 출력·복사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⑥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산원장등록주식등 분산원장등록주식등

<u><신 설></u>

이 아닌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하거나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아닌 전자등록주식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으로 전환할 수있다.

- 1. 발행인이 해당 주식등에 대

 한 권리자 전원의 동의를 얻

 어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 2.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3조의3(분산원장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인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 또는기록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이하이 조에서 "개인신용정보"라한다)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관리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같은 법제20조의2를 적용하지아니한다.

제69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u>금융감독원장</u>에게 위탁할수 있다.

제73조(벌칙)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신 설> 제42조의2(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의 초과분 해소의무) 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제42조에 따른 초과분에 대한 해소 의무를 이 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의 안 전성 확보를 위한 재원을 적립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의 적립규모와 관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테69소	(권한의	위탁)			
	금융감복	독원장	또는	금융.	위
원회	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	록
<u>기관</u>					

제73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4	 	 	

- 1. ~ 5. (현행과 같음)
- 6. 제23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

⑤ (생략)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다.

1. • 2. (생략)

<신 설>

3. ~ 9. (생략)

<신 설>

10. • 11.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신 설>

<신 설>

하여	전자등록입	널무에	분산원
장을	이용하지	아니힌	- 자

- 7.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업무에 분산원장을

 이용한 자
- ⑤ (현행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 -----

- 1. 2. (현행과 같음)
- 2의2. 제23조의3에 따라 개인신 용정보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 3. ~ 9. (현행과 같음)
- 9의2. 제42조의2에 따라 재원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 10. 11. (현행과 같음)
- (<u>2</u>) -----
- 1. (현행과 같음)
- 1의2.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 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u>자</u>
- 1의3.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열람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
	<u>지 아니한 자</u>
2. ~ 15. (생 략)	2. ~ 1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